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853호, 2026. 7. 7. 공포, 2027. 1. 8.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교육 부담 완화와 제도 정착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유사한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전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교육의 종류를 규정, 교육시간(3시간 이상)은 별표 4, 교육내용은 별표 5에 규정하고, 교육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교육규정에 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보수교육 주기 내에 동일한 직무교육 대상으로 다시 선임되거나 채용된 경우 이전에 받은 직무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면, 신규교육을 면제하고, 기존 교육 이력을 연계하여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6. 9. 23. ~ 11. 2.)
- 3) 행정규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 ① 법 제31조의2제1

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단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교육 시간은 별표 4에 따르고, 교육내용은 별표 5에 따른다.

③ 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2. 건설근로자로 채용되는 경우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3. 선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선원법」, 「선박직원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승무 전 안전교육(단, 교육 유효기간 내에 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게 된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직무교육 대상으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경우에는 이전에 받은 직무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면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의 이수 기한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제35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외국인근로자	3시간 이상
--------------------	--------	--------

별표 5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제28조의2제2항 관련)

교육 내용
○ 안전의식함양 및 근로자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종류·착용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사항
○ 기본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유형별(떨어짐·넘어짐·끼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폭염·한파 등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화재대피요령 및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30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적용례) 제28조의2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공단이 실시한 외국인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8조의2(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단을 말한다.</u> <u>②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에 따르고, 교육내용은 별표 5에 따른다.</u> <u>③ 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다.</u> <u>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u> <u>2. 건설근로자로 채용되는 경우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u> <u>3. 선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선원법」, 「선박직원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승무원 안전교육(단, 교육 유효기</u>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① ~
③ (생략)
<신설>

제35조(직무교육의 신청 등) ① ·
② (생략)
③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
로 선임되어 선임신고를 하는

간 내에 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
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직무교육을 이
수한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
지 않게 된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직무
교육 대상으로 선임되거나 채용
된 경우에는 이전에 받은 직무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면 직무교
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의 이수 기한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
로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
다.

제35조(직무교육의 신청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경우에는 전직 전에 받은 교육
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
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